

## 2006년도 지적재산보호 해외동향 및 사례 연구\*

심미나\*, 이영준\*,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 The International Trend and Case Study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in 2006

Mina Shim\*, Young-jun Lee\*, Jong-In Lim\*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security, Korea University.

#### 요 약

최근 들어 IT기술의 발전과 정보의 디지털화와 더불어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최신 지적재산 보호의 주요국의 최신 동향과 지적재산과 관련된 분쟁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최신 동향의 주요 특징들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권리보호와 관리기술의 개발 및 지적재산권 법제 개선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I. 서론

미국특허상표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의 발표에 따르면 2005년 미국 내 10대 특허등록기업은 IBM(2,941건), 캐논(1,828건), HP(1,797건)에 이어 우리나라의 삼성그룹(1,641건)이 5위를 차지하였고(USPTO, Jan 10, 2006), 총 328,000건의 특허 출원을 기록해 세계 4 대 출원대국이 되었다. 한국특허청(KPAA)의 2005년 한국 특허출원 동향조사에 따르면 2003년, 2004년 다발명 및 특허출원국은 일본과 미국이 주도하여 우리나라가 그 뒤를 바짝 추적하고 있다.

권리분쟁에 있어서는 분쟁률이 가장 낮은 나라는 독일, 높은 나라는 중국으로 조사되었으며, 내국인의 특허 권리분쟁은 컴퓨터와 건설 분야에서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연구주체에 따른 기술 분야별 권리분쟁 현황의 결과 컴퓨터 분야(기업)의 경우 총 145건 중 80건이, 전자/통신 분야(기업)의 경우 총 96건 중 62건이 무효심판으로 나타나고 있다.[1]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내 및 국제 특허출원과 보유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아직 국제 특허분쟁이 많지 않고 분쟁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대두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IT와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사회문화적, 경제적 영향이 급증[2]하고 있고 정보의 디지털화로 인한 사이버 상에서의 지적재산 분쟁의 문제는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다.

정보보호를 위한 암호화 기술은 뛰어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정보보호기술 분야는 외국에 비해 2.5년이 뒤처지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3] 특히 지적재산 보호 및 권리관리를 위한 기술은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

지적재산은 곧 국가의 경제력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정보보호의 측면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문제인식과 대응,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본 고에서는 2006년도 최신 현황을 중심으로 해외 주요국의 지적재산 (특히, 특허 관련)보호 동향과 분쟁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지적재산 보호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대학 IT연구센터 육성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 II. 관련 연구

한국 특허청(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PO)과 각국 관련기관 및 보도 자료를 통해 2005년도 12월말부터 2006년 5월까지의 최신 해외 지적재산권 동향과 분쟁사례를 조사하였다. 본 절에서는 국가 및 기관별 개별동향을 나열하고, 구체적인 결과분석은 III.절에서 다룬다.

### 2.1 국가 및 관련 기관별 최신 동향

#### (1) 미국

- 저작권 침해 대상국 중심의 지재권 보호 지원 및 개선 촉구 활발

미국은 말레이시아에 적극적 지재권 보호를 촉구하고 나섰다.[5] 미국은 말레이시아를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감시대상국으로 정하였으며 불법복제 영화 및 게임디스크가 말레이시아에서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및 전 세계에 유통되고 있다는 사항에 주시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파키스탄 연방수사국에 지재권집행전담부서 신설 요청하였으며,[11] 중국정부에도 지속적으로 지재권 보호이행에 대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

특히, 미법무부는 아시아 지역내 주요 지재권 분야 집행을 위해 지식재산법 집행조정관을 파견하여 아시아 지역내 지재권침해 범죄수사 및 기소업무 조정 및 해외 기관 법률 및 기술고문 지원, 아시아 지역 지재권범죄 동향 파악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는 전 세계 지재권 보호를 위한 중대한 시도로서 미국의 적극적 행보를 엿볼 수 있다.[12]

기업의 경우, HP는 싱가포르에 지재권 라이선싱 전담팀 신설,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인도, 대만, 중국과의 신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는데 이는 지식자산을 현금화하는 수단을 확대하고 R&D 투자에 대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허권 행사 뿐 만 아니라 지재권 라이선싱을 주력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6]

- 라이선싱을 통한 이익독점 및 혁신위협 등 역기능 방지를 위한 필요성 및 법률개선 요구

최근 미국은 소프트웨어 특허법의 개정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다. 미 컨설팅회사 Ovum은 최근 조사를 통해 소프트웨어 특허법이 혁신저해의 요인이 있다고 인식하고 단순한 라이선싱을 통한 돈버는 수단으로서가 아닌 혁신조장 및 보급목적의 초기 목적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특허의 역기능으로 점차 소프트웨어를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을 증가시키고 있다.[13]

#### (2) 중국

- 지재권 침해를 조장하는 관련 법률의 우려로 각국으로부터의 지재권 보호강화 요구 증가 및 사법적, 행정적 방침 개선 노력

매르켈 독일총리는 중국에 지재권 보호 강화를 요청하고, 중국법제상 공개입찰 시 기술관련 상세정보를 공개하여야 하거나 제품인증을 위한 고도로 상세한 설명제공이 지재권 보호나 영업비밀 보호의 침해를 조장함을 지적하였다.[7] 이에 중국 당국은 사법적, 행정적 방침 고려로 정보자산의 효과적 보호에 힘쓸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중국은 중국에서 모바일 콘텐츠사업을 벌이고 있는 웹스터의 콘텐츠를 모방하여 콘텐츠를 판매하는 등의 침해행위에 대해 모바일 콘텐츠에 대한 위조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위조업체에 대한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변화태도가 없는데 대해 엄한 처벌을 내리겠다는 약속을 하였다는 이유를 들었다.[8]

중국 지방법원은 지재권 침해사범에 징역1년에서 7년 선고하는 등 제재의 힘을 싣고 있다.[14]

- 정책 추진 및 사법적 지원 강화

중국공안은 미국, 캐나다, 호주 및 일본의 인터폴 및 수사기관과 지재권 위반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국제적으로 조직화된 지재권 범죄소탕을 위해 사법적 지원을 다

하는 합의하였다. 2000년에서 2005년 까지 저작권 침해범죄로 인한 침해 저작권 가치는 RMB35억 위안(4억3천7백만달러)로 상당하다.

또한 중국 저작권보호 국가실무그룹(China's National Working Group for IPR Protection)은 2006년도 저작권 추진계획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개하고 미국을 포함한 해외국가에서 다수 제안되었던 중국의 저작권 시스템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대응 및 개선을 포함하고 있다. 금번 추진계획에서 중국은 저작권 제도의 모순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것으로도 저작권 제도가 개선되고 있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다.[15]

- 지식재산권법원 개설 추진

중국은 현재 지식재산권법원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식재산권법원이 설립되면 저작권소송 비용이 현재보다 감면될 것이나, 저작권 설립 계획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법원구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국은 타 국가의 시스템을 검토하며 중국에 맞는 시스템을 갖추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24]

(3) 일본

- 타국과의 특허심사 지원체계를 통해 글로벌 특허획득 노력 강화

미국·일본, 특허심사 협력 위한 '특허심사 하이웨이' 구축을 통해 양정간의 특허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사결과를 상호 교류하여 심사부담을 줄임으로써 일본과 미국 산업계의 글로벌 특허획득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25]

- 강력한 법적 대응

특허, 상표 및 의장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개인에 대해 최대 10년징역 구형 및 천만엔 벌금형 조항을 포함하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4) 홍콩

- 저작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법 마련을 통해 적극적 노력

홍콩정부는 저작권 캠페인에 구글 서비스를 이용하여 인터넷 검색시 6백만 페이지 분량의

검색화면에 저작권 보호를 촉구하는 사이트가 링크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6]

또한, 홍콩세관은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그룹을 운영을 개시하였다. 홍콩세관 지식재산권 보호팀은 2006년 4월 일반인으로 구성된 11개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그룹을 운영하여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저작권 침해행위 단속을 개시하였다. 이들은 저작물 침해행위 및 불법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를 찾아 당국에 보고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홍콩 지식재산국은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파일다운로드 및 인터넷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점차적 규제강화를 실시하고 있다.[16]

-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적극적 법적 대응

홍콩대법원은 2006년 1월 홍콩의 4개 ISP에 대해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자들의 신상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저작권 권리자들의 요청에 응할 것을 명령하여 적극적 대응자세를 보이고 있다.

소니 BMG, 시네폴리 등 7개 음반사들은 자사 저작권 침해 22명 혐의자들의 개인정보를 관련 ISP들로부터 획득할 수 있도록 홍콩대법원에 요청하였으며, 이를 ISP들에게 명하였으나 4개 가운데 I-Cable Webserver사는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하였다. 홍콩은 "개인정보법"에 따라 개인정보법의 예외조항으로 범죄와 같은 불법행위에 개인정보의 도용을 막기 위한 경우 개인정보의 공개를 허용하며 저작권 침해도 상기 불법행위에 포함된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개인정보법이 저작권 침해자들의 보호기제로 악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다.[17]

(5) 필리핀

- 위조방지 및 관련 처벌 강화 및 전략수립을 통한 저작권 강화 노력

필리핀정부는 지식재산 집행정책 강화의 일환으로 지식재산관련 범죄에 대한 위반소송에 '비타협 원칙'을 적용하여 위조방지 및 관련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로써 저작권 위반자

기소 권한을 강화하고 동시에 정부의 강력한 지적권 강화 의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27]

필리핀 특허청 또한 최근 국가지식재산 진흥 및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전략수립에 착수하고 지역예술가, 뮤지션, 디자이너 및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지적권 침해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대국민 홍보를 시행하도록 하여 인식제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6) 인도/말레이시아

- 법개정을 통한 지적재산제 적용가능성과 편의성 증대

금년 5월 인도는 특허법 개정을 통해 인도의 지식재산제도의 실질적인 적용가능성 및 사용자 편의가 높였다.[28] 공개일자에 대한 특정규정을 두어 특허출원서는 법정규정 18개월 만료 이후 한달 이내에 공개하며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사결과는 심사요청이후 6개월 이후에 공표하도록 하였다. 해외특허허여는 21일로 단축하고, 사용자편의를 위해 심사요청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였다.

- 지적재산 보험 출시 가능성 검토

인도 산업계는 특허침해에 대한 보호 및 특허 유지비용 등 관련 비용을 보장해주는 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지각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관련 상품을 제시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최근 특허보험의 가능한 두 가지 유형으로 특허침해 대응보험 및 특허권 시행 보장보험을 제안하며 각각 경쟁업체에서 제기한 소송 대응과 자사 특허 침해회사의 대응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31]

- 말레이시아, 지적권 침해소송 특별법원 설립 추진

(7) 국제일반

- 디지털 저작권 관리시스템을 통한 SMG & MS의 인터넷상 지적권 보호노력

상하이미디어그룹(SMG)과 마이크로소프트

(MS)는 인터넷상의 지적권 보호를 위한 디지털 저작권관리시스템(Digital Right Management, DRM)에 관해 협력하고 MS의 윈도우 미디어 DRM10을 채택하여 인터넷과 모바일폰으로 전송되는 비디오 및 오디오 콘텐츠 보호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는 중국내 인터넷과 모바일폰으로 2006 피파 월드컵 방송을 전송하는데도 사용되는 등 지적권 보호 노력의 일환이다.[32]

- 아시아지역 영상 저작물 침해 기법 점차 지능화

영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미국영상협회(MPA)에 따르면 아시아에서 영상 저작권 침해 기법이 나날이 지능화되어 저작권 보호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 이전에는 대형공장에서 이루어졌던 불법복제가 아파트와 같은 가정주택에서 이루어지고 축소화됨에 따라 수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연간 수천만장의 불법DVD 및 CD가 복제되고 있어 불법복제 장치의 쉬운 이용에 문제가 심각하다.

DVD 및 CD의 불법 복제 증가추세와 함께 온라인상에서의 불법 파일공유로 인한 영상 저작물 침해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MPA 통계에 따르면 2005년 불법복제 DVD적발량은 2004년 대비 115% 증가하였다. [18]

- 저작권 보호관리 기반의 P2P기반 영화서비스 개시

P2P에 대응해왔던 헐리우드 영화사 워너브라더스는 2006년 3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를 시작으로 영화 및 TV쇼 판매 P2P서비스'인투무비'를 개시하였다. 워너브라더스는 아르베이트 모바일과 함께 온라인에서 유료로 다운로드 받는 서비스로 지적권 보호를 위해 아르베이트 모바일의 GNAB기술을 적용하여 중앙서버에서 모든 저작권 보호 관리를 하는 합법적 P2P서비스를 제공한다.[9]

- 전자태그(RFID) 시스템 도입을 바탕으로 비아그라 위조 대응

회아자(Pfizer)는 비아그라 위조 방지를 위해 비아그라 제품에 전자태그칩을 장착했다. 이미

2005년 12월 설치가 시작되었으며 2006년말까지 케이스 뿐만 아니라 병에도 RFID를 장착하여 위조판매 근절을 계획하고 있다.[19]

(8) EU

- 소프트웨어 특허대상 제외

유럽 특허청은 소프트웨어를 특허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미국이 우려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EU는 소프트웨어 특허가 혁신을 위협하고 라이선싱을 통한 이익 극대화에만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강경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2006년 초 확산조짐을 보이던 EU 컴퓨터관련 발명의 특허성에 대한 지침안 찬반논란의 후속 결과이다. 2005년 컴퓨터 프로그램 특허지침으로 알려진 컴퓨터관련발명의 특허성에 대한 지침안이 유럽의회에 의해 거절되었으나 유럽위원회에서 특허시스템 변경안에 대한 공개논의를 개시함에 따라 프로그램 특허에 대한 찬반논쟁이 가열되어왔다.[33]

- 지식재산 침해사범에 대한 강경대응

EU는 지식재산 침해사범에 대해 강경책으로 대응하고자 나서고 있다. [34]지식재산 침해사범에 대한 형사처벌법안은 지식재산 침해 시도, 협조 및 범죄 교사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조치를 취하며 수년간의 구형 및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EC의 노력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에 따른 규정보다 강도 높은 대응이며 지재권 권리자는 경찰의 수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범죄조직에 의한 지식재산침해 보도에 주력하였으나 본 형사처벌법안은 광범위한 대상에 걸쳐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전망이다. 법안에 따르면 십대 파일공유자, 불법 파일 및 소프트웨어 공유자 및 심지어 지재권법 개정에 저해 캠페인을 벌인 행위자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식재산법에 대한 대중의 평판을 악화시킨 것은 다수의 지재권 권리자, 유럽의

동조자 및 미국 정부에 의한 지나친 법률적 대응 방식에서 비롯되었다.

- 저작권 침해 규제를 위한 데이터 유지에 관한 EU지침 논쟁 격화

창작 미디어 비즈니스 연합(CMBA)은 2005년 12월경 EU위원들에게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 규제를 포함하는 EU지침 개정을 요청하였다. 데이터 유지에 관한 EU지침은 통신업체 및 ISP에 대해 고객들의 서비스 이용기록에 대한 정보를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보유하도록 강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회원국들간 데이터 유지에 관한 법률을 조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통신업계는 데이터 유지기술의 소요비용에 대해 우려하고 시민연대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위협 가능성을 주장하며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20]

(9) WIPO

- 방송에 대한 권리와 웹캐스팅 권리 구분을 통한 방송사업자의 권리보호

WIPO는 금년 5월 방송에 대한 권리와 웹캐스팅 권리를 구분하는데 합의하였다.

WIPO회원국은 전송권과 관련하여 방송사업자들의 권리를 정의하는 새로운 협약 신설에 대한 논의 중 웹캐스팅을 방송과 분리하자는 의견에 동의하였다. 방송사업자들은 디지털 전송과 같은 수십 년에 걸쳐 이룩해온 기술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전송에 대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해왔으며, 1961년 10월 26일 로마에서 채택된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로마협약)에 따른 권리와 유사하게 전송권에 대한 보호를 주장해왔다. 방송사업자들의 권리보호에 관한 협약 초안은 방송사업자들의 배포 및 재전송에 관한 배타적 권리승인을 담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유무선으로 전송되는 웹캐스팅을 방송과 분리하자는 주장은 미국에 의해 강력하게 지지되었으며 결국 그 외 국가들도 웹캐스팅을 방송과 분리하는 데에 동의하였다.

- 상표권 갱신등록 온라인 서비스 개시

온라인상으로 상표권 갱신등록을 할 수 있는 전자상표갱신등록("e-renewal") 서비스를 2006년 4월 개시하여, 상표권 보호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36]

- 불법도메인네임 점유에 따른 분쟁증가

WIPO에 따르면 유명인의 이름을 비롯한 타인의 인명 및 상표를 부당하게 도메인네임으로 등록하려는 도메인 점유행위가 증가하였으며, .travel, jobs, .asia와 같이 신규도메인네임을 도입함에 따라 불법도메인 점유행위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분쟁유형이 주로 잘 알려진 브랜드, 패션 브랜드, 유명인, 스포츠인의 인명 등의 침해대상이며 지식재산 권리자들의 권리보호가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37]

2.2 분쟁 및 판례 분석

- 아마존닷컴 v. 피터 칼빌 : 아마존닷컴 원클릭 특허 제심사

미국특허상표청(USPTO)는 아마존닷컴의 원클릭 특허 제심사에 착수하였다.[35] 이는 아마존닷컴에서 구매한 책의 배달이 늦어지는 것에 화가난 뉴질랜드 배우 피터 칼빌 리가 유사 기술이 아마존닷컴보다 18개월 먼저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제심사를 요청하여 이루어졌으며, 원천기술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아마존닷컴은 원클릭시스템이 전자상거래의 중요한 혁신기술임을 재증명하는 기회로 여기며 기술의 타당성에 확신하고 있다.

- 머크익스체인지 v. 이베이 : '즉시구매' 기능관련 특허침해 소송, 특허침해금지명령 제한

미국대법원은 머크익스체인지에 금지청구권 허용 않기로 판결하며 이베이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특허침해소송에 당연하게 침해금지명령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미대법원의 입장으로 하이테크 회사들이 향후 금지청구권으로 인한 압박에서 여유를 갖게 될 전망이다.[38]

머크익스체인지가 이베이측에서 '즉시 구매

(Buy it Now)'기능에 대한 전자상거래 특허 2건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된 본 소송은 2003년 머크익스체인지가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이베이를 상대로 금지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하였으나, 본 소송을 맡은 지방법원은 일반적 관행과는 달리 이베이에 침해금지명령을 내리지 않고 피해보상액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하급법원의 판결을 번복하고 특허침해금지명령을 내렸으며 금지청구권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베이와 머크익스체인지간의 소송은 각계 비즈니스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다. 하이테크 기업들은 전혀 어떤 제품도 생산하고 있지 않으면서 특허 라이선싱으로 수익을 챙기려는 회사인 특허 사냥꾼(Patent trolls)들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배심원은 머크익스체인지의 특허가 침해되었다고 인정하며 3천5백만 달러의 피해보상액을 이베이에서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추후 5백5십만 달러로 피해보상액이 확정되었다.

- 퀄컴, 브로드컴상대로 3번째 소송 제기

퀄컴은 샌디에고 연방법원에 브로드컴이 고속무선표준인 WCDMA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브로드컴의 무선칩 셋 생산중지를 요청하였으며, 이로써 양사는 산타아나 지방법원, 샌디에고 지방법원 그리고 미국과 유럽에서의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에 까지 법적공방을 펼치고 있다.

- TCD 전자통신회사 v. 저작권연맹 : ISP에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책임 부과

덴마크 대법원은 2006년 2월 ISP에 대해 서비스 이용자들의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EU저작권법에 근거하여 판결하였다. TCD를 비롯한 ISP들은 서비스 이용자들이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 파일공유 서버를 운영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저작권자들은 법원에 ISP의 서비스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금번 판결은 EU전역의 저작권자들의 권리보

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선례이며, 유럽의 ISP 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 또한 이번 판결로 인해 덴마크내 불법 파일공유 행위에 대한 저작권자들의 실제 적 법적 대응이 가시화될 전망이다.[29]

- 구글 v. 퍼팩트10 : 구글 이미지 검색기능 의 저작권 위반 판결

성인사이트 업체 퍼팩트10은 2004년 11월 구글을 상대로 자사의 '썸네일(프린트 전 미리 보는 축소 사진)'을 제공하여 자사의 저작권 침해 를 주장하였다. 판결에서 퍼팩트10의 자회사인 영국의 포네스타즈 미디어에서 저작권으로 보 호받는 축소이미지를 제공하는 휴대폰 서비스 를 하고 있으며, 구글이 해당 서비스에 피해를 줄 수 있음이 인정됨에 금지에 협의토록 명령 하였다. 그러나, 구글의 제3자 사이트를 통한 원본검색 기능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소지가 없다고 밝혔다.[10]

- 영국대법원, 소프트웨어 파일 공유 위법 판결

2006년 1월 영국 대법원은 ISP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소프트웨어 파일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난 150명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명령을 내 렸다.

소프트웨어 업계 대표하는 이익단체인 FAST 는 Operation Traker라는 소프트웨어 공유 프 로그램을 통한 소프트웨어 공유 실태를 1년간 추적한 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에 인터넷을 통해 소프트웨어 파일을 공유하는 150명의 신상공개 를 요구하였으며, 이에 BT, Telewest, Tiscali, NTL 등 관련 ISP들은 파일 공유자들의 개인 인적사항을 FAST에 제출해야 한다.

영국 음반계는 이미 불법 음반파일 공유에 대한 대응절차에 착수하였으며 소프트웨어 업 계도 이제부터 소프트웨어 공유에 대한 전면 대응을 시작하였다. FAST 통계에 따르면 2004 년도 영국의 소프트웨어 온라인 공유로 인한 피해액은 176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진 다.[21]

- 독일 뮌헨법원, 제3자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재판매 불법 판결

2006년 1월 독일 뮌헨지방법원은 '소프트웨어 재사용'으로 얼얼어지는 제3자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재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불법판결을 내렸다. 금번 판결은 재사용 소프트웨어의 판매 를 통해 이익을 얻는 소프트웨어 브로커들의 활동에 제약을 가하게 될 것이다. usedSoft 및 일부 소프트웨어사에서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재판매해왔으 며 그로 인해 제3자에서 온라인 다운로드를 통 해 소프트웨어 복제본을 사용할 수 있었다.[30]

- Netflix v. Blockbuster : DVD 대여 특허 분쟁

우편으로 DVD를 신청해 보는 DVD대여방식 (DVD-by-post)은 현재 블록버스터와 아마존에 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DVD대여업체인 넷플릭스는 블록버스터가 DVD대여 방법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중 이며, 원 클릭 특허분쟁이후 발생한 방법특허 분쟁이다.[22]

- RIM v. NTP : '블랙베리' 분쟁 합의

캐나다 리서치 인 모션(RIM)은 특허 보유업 체인 NTP에 6억1천달러 상당을 지불하고 4년 간 지속된 특허분쟁을 종결하는데 합의하고, 이 로 인해 특허분쟁으로 인한 '블랙베리' 미국시장 퇴출 위기를 모면했다. NTP는 관련 특허에 대 한 라이선스를 RIM에 양도하였으며 향후 관련 소송 및 법정절차를 취하하였다.[23]

- 구글 v. RTI : IP관련 특허소송 제기

RTI는 구글을 상대로 자사의 인터넷 텔레포 니(IP) 관련 특허를 허가없이 사용했다며 소송 을 제기했다. RTI는 인터넷상에서 전화를 거는 기술(VoIP calls)을 발명하였으며 현재 시스코, 베리존, IBM, 야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자사기술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다. RTI는 이외에도 케이블비전과 보니지사에 대한 소송 도 제기한 상태이며 4년간 소송이 진행될 경우 50달러의 손해비용이 추정된다. 구글은 인스턴

트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VoIP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39]

기 때문이다.

- 중국에 대한 각국의 지적권 보호 요청 증가로 인한 적극적 대응 노력

특히, 중국의 경우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 등 많은 국가로부터 지적권 보호를 강력히 요청받고 있다. 중국은 인터넷 및 IT기술 보급 급증으로 인한 지적재산권 침해가 상대적으로 급증하고 있고, 이를 제재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 현재의 중국법제상 외국 기업의 공개입찰시 기술관련 상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거나 콘텐츠 및 기술모방 등 침해행위가 비밀비재한 문제점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경제적 교류에 있는 국가의 기업들은 거대한 시장인 중국과의 사업을 원하는 만큼 지적권 보호 요청에 적극적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국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적권 보호를 위한 보다 강력한 요구를 할 수 밖에 없고 점차 이러한 요구가 커지고 있고, 향후에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중국정부는 지식재산권법원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도 지적권 추진계획 세부사항을 공개하고 미국을 포함한 해외국가로부터의 지적사항에 적극적 대응과 개선 노력을 알리고 있다고 보인다.

- 다양한 지적권 보호 방안 강구

일본, 홍콩, 필리핀 등 수많은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지적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다국간 협력체계를 이루고자 노력하는 추세이다.

미국과 일본은 '특허심사 하이웨이'구축을 통해 양청간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사부담을 줄임으로써 글로벌 특허 획득의 가능성을 증가시켰고, 홍콩은 인식제고의 방안으로 구글 서비스를 활용한 저작권 캠페인을 벌이는가 하면 지적권 침해 모니터링 그룹을 일반인으로 구성 및 운영함으로써 불법 저작물 침해행위 및 불법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 웹사이트의 단속에 힘쓰고 있다.

필리핀 역시 위조방지 및 관련 처벌을 강화

### III. 분석 결과

II절에서 나열한 각국 동향과 사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경향으로 요약될 수 있다. 물론 2005년 이전부터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노력은 지속되어 왔고, 분쟁이나 판례 또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최신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노력수준과 향후 지표를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3.1 국가 및 관련기관별 최신 동향 분석

##### (1) 주요국의 지적권 보호 동향

- 선진 국가들의 저작권 침해 대상국을 중심으로 한 지적권 보호 요구의 지속적 증가 추세

미국을 중심으로 캐나다, 호주, 일본, 홍콩 등은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는 국가이다. 특히 미국은 중국이나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러시아 등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큰 감시대상국(혹은 대상국)에게 지적권 보호이행에 대한 압력을 가하거나 적극적 지원을 통해 개선을 촉구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불법복제 영화 및 게임디스크가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및 전 세계에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시하여 감시대상국으로 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파키스탄에도 지적권 집행전담부서의 신설을 요청하고 보호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지역 내에 주요 지적권 분야 집행을 위하여 미법무부는 지식재산법 집행조정관을 파견하여 아시아 지역 내 지적권침해 범죄수사 및 조정업무와 동향 파악에 힘쓰고 있다.

이들 국가들과의 경제사회적 교류에 있어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은 경제적 이익확보에 무엇보다도 밀접하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



하고 전략을 수립하였고, 말레이시아는 지재권 침해소송 특별법원 설립을 추진하는 등 지재권 강화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이한 점은 인도 산업계의 지적재산 보험출시 검토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지적재산 보호나 분쟁에 대비한 지적재산 보험 상품이 존재하지 않으나, 인도는 침해에 대한 보호 및 특허 유지비용의 필요성을 지각하고 특허침해 대응보험 및 특허권 시행 보장보험의 유형을 검토하고 있다.

#### - 적극적이고 강력한 법적대응 시행

특히 홍콩대법원은 적극적인 법적 대응의 방안으로 4개 ISP에 대해 인터넷상의 지재권 침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일부 사생활 침해의 주장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법”의 예외조항을 들어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정보 도용방지의 경우 개인정보 공개를 허용하며, 개인정보법이 지재권 침해자들의 보호기제로 악용될 수 없도록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 - 지재권 보호기술 개발 및 시행

점차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한 영상 저작물 침해기법은 지능화되고 다양화되고 있어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 복제 장치 사용의 용이성으로 인하여 불법DVD 및 CD복제가 난무하고, 온라인상 파일공유가 심각하다. 비아그라와 같은 특허 의약품의 복제도 간단하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기술적 방안 마련으로 구체적인 대응이 가능한데, 그 노력의 일환으로 상하이미디어그룹인 SMG와 MS사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협력 하에 안전한 비디오 및 오디오 콘텐츠를 인터넷과 모바일폰으로 전송하고 있다.

P2P문제로 대응해왔던 워너브라더스 영화사 또한 저작권 보호관리 기반의 합법적 P2P기반 영화서비스를 개발하여 온라인에서 유료로 안전한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아그라 위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케이스에 RFID칩을 장착하는 전자태그시스템을 도입하여 위조판매 근절을 계획하고 있다.

#### (2) 주요 기구의 지재권 보호 동향

EU 및 WIPO는 법 개정과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강경한 대응을 지속하고 있는 추세이다.

#### - EU의 법 개정 및 제도적 개선을 통한 강경대응

최근 들어 일부 국가들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발명)에 대한 특허대상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추세인데, 유럽 특허청은 2006년 1월 소프트웨어의 특허대상을 제외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소프트웨어 특허가 라이선싱을 통한 이익극대화에만 이용되는 등 혁신저해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또한 EU는 지식재산 침해사범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을 공표하고 침해뿐만 아니라 침해시도, 협조 및 범죄 교사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 조치를 취하고 구형 및 상당 벌금형을 규정하였다. 저작권 침해 규제를 위한 데이터 유지에 관해서도 통신업체 및 ISP에 대해 고객들의 서비스 이용기록 정보를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보유하는 것에 대한 강제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개인의 프라이버시 위협 가능성을 두고 시민연대의 반대가 제기되고, 통신업체의 비용증가문제가 반대의견으로 제기되고 있다.

#### - WIPO의 권리보호 노력

WIPO는 방송에 대한 권리와 웹 케스팅 권리구분을 통해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합의하였으며, 방송업자들의 배포 및 재전송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승인하였다.

제도적 절차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상표권 갱신등록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소리 및 향기상표 등록을 인정하여 기보법을 통해 보호가 수월한 소리의 상표등록을 인정하였다.

### 3.2 분쟁 및 판례 분석

#### (1) 특허 제심사를 통한 특허무효화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특허분쟁 증가

아마존닷컴의 '원클릭' 특허 재심사 사례와 머크익스체인지의 '즉시구매' 기능에 대한 원고측의 특허침해금지명령 제한 거부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IT기술을 활용한 특허는 유사 서비스나 기술에 의하여 특허획득 이후에도 특허타당성 검증을 요구받는 경우가 수없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점차 특허무효화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의 측면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환경이해와 대응책이 없다면 심각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

#### (2) ISP에 대한 서비스 이용자의 인터넷 저작권 침해행위 책임 부과 추세

덴마크 TCD v. 저작권연맹의 사례에서 법원은 ISP에게 서비스 이용자의 침해책임을 부과하여 EU전역의 저작권자들의 권리보호 측면에 매우 중요한 선례를 남겼는데, ISP들은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 파일공유 서버를 운영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 (3) 소프트웨어 파일공유 및 재판매 등 침해에 대한 강력규제

마찬가지로, 영국 법원도 소프트웨어 파일 공유 위법에 대한 판결에서 ISP에 대해 공유자 150명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관리책임과 함께 의무를 지우고 소프트웨어 공유에 대한 전면적 대응을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대응 사례가 증가할수록 유사 분쟁에 있어서의 ISP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제3자에 대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재판매 불법 판결 사례 또한 재사용 판매 이익을 얻는 소프트웨어 브로커들의 활동을 제약하면서 동의없는 재판매와 그로 인한 제3자 온라인 다운로드 복제본 사용을 강력히 금지하고자 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점차 증가하는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한 강력한 규제 추세의 반영으로 해석된다.

## IV. 우리나라의 향후 개선 방향

### 4.1 국내 현황

우리나라는 1957년 저작권법이 제정된 이래 지속적인 개정을 거쳐 현재의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 지적재산 보호를 위한 법령에 따라 다국간 무역거래 등에서의 지적재산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 제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적정보의 디지털화에 따른 다양한 복제기술 발달과 보호기술 우회로 국내 지적재산의 피해규모가 대단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 무역거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책임강화' 등 우리 산업에 큰 영향을 줄 핵심 쟁점이 상당수 등장하고 있어 다양한 논쟁이 커지고 있다.

현재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OSP가 권리자의 저작권 침해 방지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대응하면 된다. 그러나 한 미 FTA에서는 OSP의 면책 대상을 유형별로 특정하고 면책요건을 구체화해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권리자 확인을 위해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는 우리와 달리 미국에서는 권리자라는 진술만으로도 OSP가 적절한 대응을 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진다. 특히, 미국법에서는 OSP가 권리침해자의 정보를 권리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밖에 다양한 기술적 보호조치 도입,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 인정 등의 쟁점도 있다. 2003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저작권조약 가입을 시점으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기술적 보호 조치를 프로그램 저작권의 효과적 보호 조치로 정의하고 정당한 권원 없이 이를 회피, 제거 손괴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접근통제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복제통제 장치만을 명시적으로 보호 범위에 포함시켜 향후 접근통제 조치가 포함되는 등의 규정 강화가 될 경우 이에 대한 기술적 조치에 상당한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 4.2 개선 방향

DMB, Wibro 등 유비쿼터스 기술 및 서비스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현실에서 앞서 살펴본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각국의 강력한 규제 분위기는 향후 우리나라의 행보를 예상하게 한다.

### (1) 인터넷법제 연계성 고려한 법개정 추진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등 지적재산관련법의 개정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의 제개정 또한 관련 내용을 감안하여 병행하여 추진해야 한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이 눈앞에 있으며, 신기술 개발로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이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다.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함께 강구되어 현재 개별적으로 추진 또는 계획 중인 이러한 관련법의 제개정 시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앞선 국외 사례와 국내 현황에서와 같이 OSP, ISP의 책임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점은 관련법의 개정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 (2) 규제 실현을 위한 실질적 기술개발

우리나라와 유사한 현실에 처해있는 국가들 역시 법제정이나 주관기관의 설립은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규제를 실현하기 위한 지적권 보호기술 개발이나 강력한 규제 노력은 그에 비해 낮은 편이다. 최근과 같이 FTA규제 강화가 예상되고 분쟁 증가 및 최신 기술로 인한 다양한 침해 가능성 증가는 지적재산권 접근통제를 위한 사전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나 침해 이후 이를 탐할 수 있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과 같은 기술개발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 (3) 인식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

법과 기술로 강력한 규제를 실현한다 하더라도 근본적 인식개선의 노력이 없이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문제는 공통적으로 그러하다. 과거 우리나라는 오프라인 상

에서의 저작물이나 기술 복제에 민감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나, 인터넷상에서의 정보교류와 디지털 정보화의 다양한 기술로 인하여 분쟁이 늘어나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졌다. 그러나 아직 문제의식의 초보적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지적재산권 보호의 타당성을 수용하는 인식수준 향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화된 법집행의 의지도 필요하지만 민간/공공 차원의 인식제고 프로그램을 통한 인식변화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각국의 동향, 분쟁사례와 우리나라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특징들을 분석하였다. 2005년 이전과 비교하여 국내외적으로 지적재산 침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그에 따라 각국의 적극적 법제 개선 및 보호노력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와 함께 실질적 보호수준이 향상되려면 법적 대응이나 제도적 개선과 함께 기술적 보호조치가 가능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 투자노력이 요구된다.

다양한 분쟁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앞으로 규제는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규제가 커질수록 자유로운 지적재산의 효율적 사용은 저해가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들의 균형을 맞추려면 권리보호와 관리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정보보호기술 발전과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지적재산은 그 나라의 경제발전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현재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제적 동향은 우리나라가 직접 겪고 있는 바와 유사하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개발될 신기술의 사용 및 적용 시 이러한 지적재산의 침해문제와 보호방법을 명확히 마련하여 불필요한 분쟁과 손해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한국의 특허동향 2005, KPAA, 2005.
- [2]김신동, IT와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사회문화적 영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Feb, 2005.
- [3] News Clipping, KPAA, 2005.
- [4][5][6][7][8][9][10] Yahoo News, 2006.
- [11]Daily Times, 2006.
- [12]U.S. Newswire, Jan 5, 2006.
- [13][www.ovum.com](http://www.ovum.com), April 5, 2006.
- [14]People's Daily Online, May 16, 2006.
- [15][16][17][18][19][20][21][22][23]Managing IP, 2006.
- [24]SignOnSandDiego.com, March 10, 2006.
- [25]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 May 24, 2006.
- [26]AsiaMedia, March 28, 2006.
- [27][www.inq7.net](http://www.inq7.net), March 22, 2006.
- [28][29][30]ag-IP-news, 2006.
- [31]okpatents.com, Feb 14, 2006.
- [32][www.interfax.com](http://www.interfax.com), April 12, 2006.
- [33]ZDNet UK, Jan 23, 2006.
- [34][35]IP News flash, 2006.
- [36]WIPO, April 7, 2006.
- [37]Financial Times, Jan 25, 2006.
- [38][www.chicagotribune.com](http://www.chicagotribune.com), May 16, 2006.
- [39]SiliconRepublic.com, Jan 3, 2006.